

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

1. 선발예정인원

시 험 명	직 류	선발예정인원	합 계
제27회 입법고시	일반행정직	6 명	16 명
	법 제 직	3 명	
	재 경 직	6 명	
	사 서 직	1 명	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(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.).

2. 시험과목

직류	제1차시험(선택형)	제2차시험(논문형)
일반 행정	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헌법, 입법과정론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
법제		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
재경	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
사서		필수(4) : 도서관경영론, 자료조직론, 정보검색론, 참고봉사론 선택(1) : 사회과학서지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

- ※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」이 적용됩니다.
- 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
- ※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부터는 제1차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입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시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3. 시험방법

-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(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/ 과목당 90분)
-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-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
4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'51. 7. 1. ~ '91. 12. 31.)

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: 사서직의 경우 1·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.

- ※ 사서직의 경우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,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응시원서 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
제27회 입법고시	2011. 2. 28.(월) ~ 2011. 3. 4.(금)	제1차시험	4. 1.(금)	4. 9.(토)	4. 30.(토)
	※ 취소마감일 3. 9.(수) 16:00	제2차시험	4. 30.(토)	5. 30.(월) ~ 6. 3.(금)	7. 16.(토)
		제3차시험	7. 16.(토)	7. 20.(수) ~ 7. 21.(목)	7. 23.(토)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 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. 28.~3. 4.) 중 09:30 ~ 23:00
※ 원서접수 마감일(3. 4.)에 한해 09:30 ~ 17:30
-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: 계좌이체(본인계좌만 가능), 신용카드 결제
- 기 타 :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)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. 28.(월) 09:30 ~ 3. 9.(수) 16:00 이며,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계좌이체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기재사항(선택과목, 영어능력검정시험 정보 등)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,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※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접수를 취소하고, 새로이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.

7.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

가. 제공대상 :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·뇌병변·지체·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

나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

장애유형		편의지원 항목	제출서류
시각장애	약시 (양안교정시력 0.04 이상, 0.3 미만)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· 시험시간 연장 1.2배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
	기타 시각장애 (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)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· 시험시간 연장 1.2배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(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)
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	중증뇌병변 (1~3급) 및 중증상지지체 (1~3급)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 · 시험시간 연장 1.2배 · 대필(선택형 필기시험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
	경증뇌병변 (4~6급)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 · 시험시간 연장 1.2배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· 의사소견서 원본 1부 · 의사진단서 원본 1부 (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)
	경증상지지체 (4~6급)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노트북 제공(논문형 필기시험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
	하지지체	· 별도 시험실 배정 (1층 또는 승강기 이용 가능 시험실)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
청각장애	동아인(2~4급) 난청인(5~6급)	· 보청기 등 지참 허용	·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

◦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◦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

※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,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(1.2배),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.

다. 신청방법 : 신청서(별첨 서식)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
→ (150-70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추천 인사과 고시담당

라. 제출기한 : 2011. 3. 9.(수) 도착 분까지 인정

- 시험장 입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,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(02-788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제출서류

① 신청서 1부(별첨 서식)

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

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(소재지)는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 하단의 [찾기서비스] → [병원/약국]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.

- 의사소견서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,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.

예시) 상지인은 지체장애 3급(상지지체)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
- 기타 시각장애인이거나 경증뇌병변(4~6급)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, 각기 다른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(별첨 서식)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8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시 험 명	TOEFL	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CBT	IBT		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197	71	700	625	65 (Level 2)	625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	352	131	35	350	375	43 (Level 2)	375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성적은 인정됩니다(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.
-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(ex. 2009년 1월에서 2009년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)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

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<참고> 2012년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

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.

시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※ 2012년도 입법고시의 경우 2009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 인정